

2022학년도

# 시흥가온유치원

## 『유치원안전계획』

2022. 3. 30.



공립 시흥가온유치원

# I 개요

## 1 유치원계획

### 가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 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등)
-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유치원안전교육)
- 학교안전종합계획
- 경기도 안전교육과정

### 나 비전과 목표

#### 비 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온 꿈 자람터

#### 목 표

365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다 6대 분야 과제별 추진 내용

6대 분야	16대 과제
1 유치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①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② 유치원안전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③ 유치원안전계획 수립·평가의 내실화
2 유치원안전교육 내실화	① 경기도안전교육과정의 실천 ②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③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④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3 교육활동 안전 강화	① 방과후유치원 및 유치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②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4 유치원 안전문화 확산	① 유치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 ② 유치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5 안전한 유치원 시설 및 환경 조성	① 안전한 유치원시설 확보 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6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① 상담 및 치료 지원 ② 유치원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③ 안전사고 재발 방지

**라** 추진과제 목록

6대 과제	6대 추진과제별 추진 내용
<p><b>1. 유치원안전 사고 예방체제 구축</b></p>	<p><b>1-1. (교육활동 중)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b>            1-1-1 안전사고 발생 시 선보고 후조치            1-1-2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p> <p><b>1-2. 유치원안전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b>            1-2-1 유치원안전사고 예방·대책 조직 일원화            1-2-2 유치원안전을 위한 추진 주체별 위원회 운영            1-2-3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p> <p><b>1-3. 유치원안전계획 수립 평가의 내실화</b>            1-3-1 유치원 안전 계획 수립            1-3-2 유치원 안전 점검 및 평가</p>
<p><b>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b></p>	<p><b>2-1. 경기도 안전교육과정의 실천</b>            2-1-1 유치원안전교육 지원 강화            2-1-2 7대 안전교육 운영</p> <p><b>2-2.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b>            2-2-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2-2-2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p> <p><b>2-3. 교육공동체의 안전대응 역량 신장</b>            2-3-1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연수 운영            2-3-2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 안전 연수 의무 이수            2-3-3 교직원·학부모 응급처치교육            2-3-4 아동학대 예방교육</p> <p><b>2-4. '안전 취약계층' 안전 관리 강화</b>            2-4-1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관리</p>
<p><b>3. 교육활동 안전 강화</b></p>	<p><b>3-1. 방과후 유치원 및 유치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강화</b>            3-1-1 돌봄 및 방과후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3-1-2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p> <p><b>3-2.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b>            3-2-1 체험중심 재난대응 훈련</p>
<p><b>4. 유치원 안전문화 확산</b></p>	<p><b>4-1. 유치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b>            4-1-1 유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한 유치원            4-1-2 행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p> <p><b>4-2. 유치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b>            4-2-1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4-2-2 '유치원 안전주간' 운영</p>
<p><b>5. 안전한 유치원 시설 및 환경조성</b></p>	<p><b>5-1. 안전한 유치원 시설 확보</b>            5-1-1 교육시설 안전점검            5-1-2 재난대비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5-1-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5-1-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p> <p><b>5-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b>            5-2-1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5-2-2 유치원급식 안전관리 강화            5-2-3 유치원 출입관리 강화            5-2-4 안전사고 대비 비상 배낭·비상장비 확충</p>
<p><b>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b></p>	<p><b>6-1. 상담 및 치료 지원</b>            6-1-1 유아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 유아 관리 강화</p> <p><b>6-2. 유치원 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b>            6-2-1 '유치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6-2-2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p>

## II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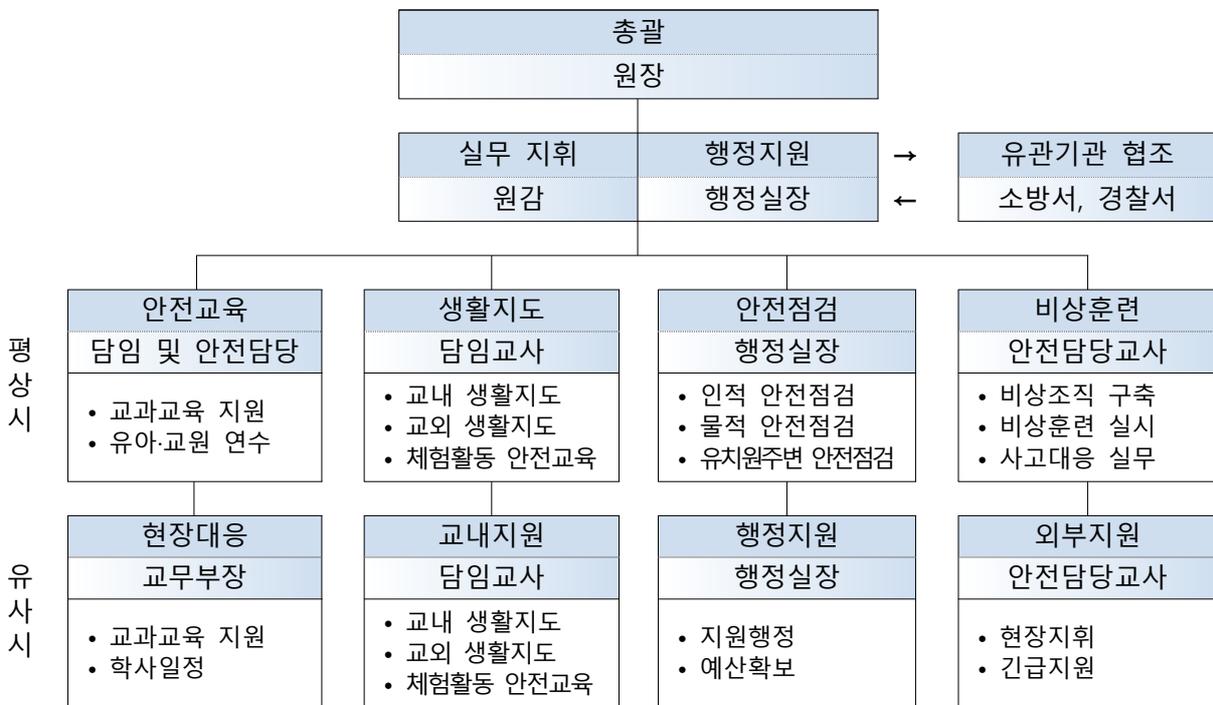
### 1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가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유치원 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유치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나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 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다 유치원 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유치원 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파악·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 협력으로 구분



## 라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 구성 : 교직원으로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
- 응급이송차량 지정(승용차 선택요일제 제외)
  - 2022 응급 이송 차량 : 원감(원감 부재시 이송시간에 따라 수업 없는 교사)
- 이송 담당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1인으로 구성함
-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시 이송교사의 복무는 출장처리하며, 사전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고 후 이송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돌아온 직후 출장 처리함
- 교육과정반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은 원감이 함
- 방과후 과정반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은 교육과정반 담임교사를 비롯한 1인(교무 또는 연구)으로 하며, 방과후 교사가 수업을 함
- 위급 시 119로 이송함

## 마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 근거 : 2020년 교육부『국가집행계획』

- 교육부 보고방법 : 안전대표 메일 신설(24시간 가동)
- 도교육청 보고방법 : 사안별 해당부서(부서장은 상황판단회의 요청 여부 결정)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 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유치원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유치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유치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유치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1)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주요 사안	해당부서	연락처
급식, 식중독 등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기획담당	031-249-0586
건강, 보건, 환경, 위생	학생건강과 학생보건담당	031-249-0291
체육교육, 유치원운동부	학생건강과 체육교육정책담당	031-249-0278
과학 실험·실습	융합교육정책과 융합교육담당	031-820-0673
자연재난, 화재, 승강기 등	학교안전기획과 안전정책담당	031-249-0685

### 2) 유관기관 협력체제

기관·단체별	연락처	협조 및 지원사항
연성 119안전센터	031-310-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li> <li>■ 현장지휘소 설치 및 긴급구조,구난활동</li> </ul>
소방서 119구조대	119	
시흥경찰서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및 장비지원</li> <li>■ 현장통제 및 경비</li> <li>■ 현장 주변 교통 통제</li> <li>■ 사고원인 규명</li> </ul>
시흥교육지원청	031-488-2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 교육</li> <li>■ 이재민 수용시설(유치원)지원</li> </ul>

### 3) 유치원 인근 병원

병, 의원		전화번호	이송소요시간 (자동차 이용)	구급차 여부	
종합병원	시화병원	1811-7000	18분	○	
	센트럴병원	031-8041-3000	22분	○	
2차병원	마음속내과의원	031-506-7000	15분		
	드림내과의원	031-431-7788	17분		
소방서	연성119안전센터	031-310-0531	5분		
관절 진료	배곧정형외과	031-432-1230	23분		
정형 외과	의원	녹향새빛의원	031-310-5700	18분	
	안과	시흥서울안과의원	031-507-1717	23분	
	치과	센트럴병원치과	031-8041-3728	22분	

4) 사안대응 체크리스트(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

확 인 내 용	조치 시간	확인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input type="checkbox"/> 상황보고 유치원장 보고, 상급기관 보고			
<input type="checkbox"/>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언론 대응(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input type="checkbox"/>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input type="checkbox"/>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안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			
<input type="checkbox"/>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input type="checkbox"/>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관련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input type="checkbox"/>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5) 비상시 교직원 일반 업무

직 책	임 무
유치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항상 유아와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다.)</li> <li>○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유치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li> </ul>
사고지휘관 (유치원 안전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li> <li>○ 유아,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li> <li>○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li> <li>○ 응급의료로 인해 유아,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li> <li>○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사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li> <li>○ 유치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하고 지도한다.</li> <li>○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유아,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li> <li>○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은 유아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li> <li>○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유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한다.</li> <li>○ 건물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유치원 밖 지정된 대피지역의 유아의 인원을 확인한다.</li> <li>○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li> <li>○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li> <li>○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조치한다.</li> <li>○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li> </ul>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li> <li>○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li> <li>○ 응급처치와 유치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li> </ul>
기능직원 (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포함) 학생보호인력 (학생관리 안전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li> <li>○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li> <li>○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li> <li>○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li> <li>○ 사고지휘관이 유치원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li> </ul>
사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 수행</li> <li>○ 유치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li> <li>○ 유치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li> <li>○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li> <li>○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li> </ul>

<b>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유아와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한다.</li> <li>○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li> </ul>
<b>유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은 유아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유아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유아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li> <li>○ 재난대응훈련 또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li> <li>○ 재난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학습한다.</li> <li>○ 재난발생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 이해</li> <li>○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 역량을 개발한다.</li> <li>○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li> </ul>
<b>학부모/보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li> <li>○ 재난에 대한 유치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li> <li>○ 재난과 관련하여 유치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유치원에 제공한다.</li> <li>○ 유치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li> <li>○ 유치원이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li> </ul>

#### 6) 유아보호인력 배치 및 근무 현황

<b>학생보호인력 (유치원안전 지킴이)</b>	인원	2명
	근무 기간	11:20~13:20
	활동	-교내에서 발생하는 유치원폭력 등 각종 비행 등을 예방하고 제지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학생 등.하원 교통지도, 취약시간대 유치원 내.외 순찰

##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 가 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유치원 건강·안전교육 시간 운영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영역	반영시간		영역	반영시간
생활안전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3시간)	안전교육 51차시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	학기당 3회 이상 (연간 10시간)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0시간)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안전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6시간)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직업안전교육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성교육 진흥조례	
응급처치교육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성교육	연간 20시간 이상 (성폭력 4시간 포함)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건강교육		
응급처치교육	수시 반영	학교보건법(제9조의2)
식생활교육	연간 2회 이상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연간 1회 이상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의8)

## 2) 세부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 추진 내용	목 표	시 기
영역별 안전교육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이수 기준인 51차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함	2022.3.2. ~ 2023.2
나침반 5분 안전교육	·교통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폭력 예방 및 중독안전, 재난안전 등 5가지 주제 안전교육	매일	매일
대피훈련활동	·소방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5회 연4회	3, 5, 7, 10, 12월 4, 6, 9, 11월
체험중심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생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4월/10월 7월 7월 4월/10월 4월/10월
가정연계 안전교육	·건강 및 안전 관련 내용 가정통신문 배부	월1회	연중
유아 체격검사	·키, 몸무게 측정을 통한 신체발달특성 이해 및 가정과의 공유(생활기록부 작성)	연1회	3월
교사 연수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긴급지원복지 유아 신고 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직무연수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3년당15시간	3월 6월 9월 3월 상시
안전관리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활용	월1회	매월 4일
유관기관과의 연계교육	·소방안전교육(시흥소방서)	연 1회	5월

\*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임.

### 3) 유치원 안전 연간교육계획

#### ■ 1학기

■ 생명존중교육 : 생 ■ 청렴교육 : 청

시기		7대 안전교육						
		영역 및 차시		교육내용				
3월	1	생활안전 1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활동해요				
	2	교통안전 1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3	생활안전 2 (실종·유괴)		유괴상황에 대해 알아요				
		재난안전 1		소방대피훈련 1				
	4	폭력·신변안전 1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경계존중)				
5	약물·사이버안전 1		내 몸을 위한 약! 바르게 먹을 수 있어요					
4월	1	생활안전 3 (실종·유괴)		길을 잃었어요				
		생활안전 4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해요				
	2	폭력·신변안전 2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교통안전2		신호등이 말해요				
	3	재난안전 2		지진대피훈련 1				
생활안전 5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4	약물·사이버안전 2		엄마, 아빠 술은 안돼요					
5월	1	교통안전 3		교통안전교육 1				
	2	생활안전 6 (실종·유괴)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직업안전 1		이것이 필요해요				
	3	약물·사이버안전 3		인터넷 사용 바르게 안전하게				
		재난안전 3		소방대피훈련 2				
4	폭력·신변안전 3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6월	1	생활안전 7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교통안전 4		안전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요				
	2	재난안전 4		지진대피훈련 2				
		생활안전 8 (실종·유괴)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무엇일까요?				
	3	폭력·신변안전 4		나는 특별해요 생				
생활안전 9 (실종·유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 1						
4	약물·사이버안전 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7월	1	응급처치 1		응급처치란 무엇일까요?				
		교통안전 5		교통안전교육 2				
	2	생활안전 10		하천과 계곡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해요				
		약물·사이버안전 5		엄마, 아빠 담배는 싫어요!				
		재난안전 5		소방대피훈련 3				
3	교통안전 6		배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탈출해요					
1학기 안전교육 시수	7대 안전교육영역 및 시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재난대비훈련)	직업안전	응급처치	차시
	10	6	4	5	5	1	1	32

■ 2학기

▪ 생명존중교육 : 생 ▪ 청렴교육 : 청

시기	7대 안전교육							
	영역 및 차시			교육내용				
9월	1	폭력·신변안전 5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	약물·사이버안전 6			함부로 먹지 않아요			
	3	재난안전 6			지진대피훈련 3			
		생활안전 11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4	교통안전 7			교통안전교육 3			
폭력·신변안전 6			유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5	약물·사이버안전 7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해요				
10월	1	생활안전 12 (실종·유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생활안전 13			전기감전을 조심해요			
	2	응급처치 2			목에 음식물이 걸렸을때			
	3	폭력·신변안전 7			기분 좋은 말, 기분 나쁜 말			
		재난안전 7			소방대피훈련 4 / 정직하게 살아요 <span style="color: green;">정</span>			
4	생활안전 14 (실종·유괴)			꼭꼭이 미아예방송				
	약물·사이버안전 8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로워요				
11월	1	생활안전 15 (실종·유괴)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요			
		교통안전 8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2	재난안전 8			지진대피훈련 4			
		약물·사이버안전 9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교육			
	3	폭력·신변안전 8			모두가 특별해요			
생활안전 16 (실종·유괴)			미아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4	교통안전 9			교통안전교육 4				
5	생활안전 17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어요				
12월	1	약물·사이버안전 10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2	재난안전 9			지진대피훈련 2			
		생활안전 18			배가 아파요			
	3	직업안전 2			안전장비를 입고 안전하게 일해요			
		생활안전 19 (실종·유괴)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			
4	교통안전 10			비(눈)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걸어요				
2학기 안전교육 시수	7대 안전교육영역 및 시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재난대비훈련)	직업안전	응급처치	차 시
	9	4	4	5	4	1	1	28
연간	19	10	8	10	9	2	2	60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매일 5분 점심시간 및 귀가지도 시 실시

#### 4) 체험중심 건강·안전교육

시기	교육명	대상	교육방법
4월	찾아오는 체험교육 '차차'	4,5세	전문가 초청
5월	화재예방 교육	전체 유아	전문가 초청
7월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전체 유아	체험교육 /생활 체험
10월	찾아오는 체험교육 '차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3세/ 전체유아	전문가 초청/ 생활 체험
12월	실증·유괴 예방교육	전체 유아	상황극

※ 상기 일정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 기관의 일정과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가정과 연계한 건강·안전교육

시기	영역	나침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내용
4월	보건안전	감염병 예방의 작은 실천 - 손 씻기
5월	폭력 및 신변안전	가정폭력예방, 부모님의 역할
6월	재난안전	폭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요
7월	생활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부터 실천해요
9월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예방, 어른에게 책임이 있어요.
10월	보건안전	기도폐쇄, 응급처치 어떻게 할까요?
11월	교통안전	신호등이 있어도 없어도
12월	약물 및 사이버 안전	스마트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어보세요

#### 6)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유치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격리조치 등 원내 확산 방지
-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체계 유지(유치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 수칙(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사용 등) 지도

#### 7)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가) 방학 시작 전 물놀이, 수상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철저: 대부분의 물놀이 사망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하천(53%), 계곡(19%)에서 발생하므로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집중 안전교육 실시
- 나) 안전한 물놀이 지도와 위기 상황시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수 및 교육 실시
- 인근 수영장 활용, 수상안전전문가 초빙, 학부모 대상 연수 등 수상 안전 예방교육 집중 실시
  - 물놀이 안전교육 자료: 유치원안전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교육자료 참고
- 다) 안전사고 예상 지역 모니터링 및 예방 캠페인 전개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및 예상 지역 모니터링: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여름 휴가철 전후에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시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 ▶ 지자체, 소방서(센터) 등과 협력하여 휴가철 유원지에 대한 안전 캠페인 전개
    - ▶ 유치원 내외, 학생·학부모 대상 자율적 캠페인 활동
    - ▶ 119 시민수상구조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지역 자율 방재단, 지역자원봉사단 등과 협력

## 8)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주요원인

- 학습자 원인 : 기초체력 저하, 자만심, 기능·준비운동 부족 등
- 지도교사 원인: 지도소홀, 수업 현장 부재, 무리한 성취요구, 환자 파악 소홀 및 조치 미비 등
- 환경 원인: 운동기구 및 시설의 노후화, 안전장치 미비, 부적절한 교구사용, 기후 및 날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체육활동 실시

나)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수업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수업 중 유아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어날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 지도교사는 유아들의 능력에 알맞은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혹시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시설관리자는 유치원 내의 운동기구나 운동 시설의 상태 점검을 수시로 하여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야외 체육활동 시 날씨 변화나 미세먼지 유무, 기온의 변화를 사전에 체크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9) 보건실 약품 관리

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하되 보관용기, 보관방법 등을 준수한다.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나) 해독성 약품은 잠금장치를 하고 주의 표시를 해둔다.

다)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의약품은 다치거나 아픈 학생에게 반드시 보건담당자가 직접 투약한다.

마) 의약품 사용은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한 사용은 줄인다.

바)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요양, 투약, 치료, 병원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항을 보건일지에 기록한다.

## 10) 유해물질 및 과학실 장비(약품) 관리 방침

가) 위험한 물질의 배치

- 휘발성 액체는 태양광선, 전기 스위치, 열기구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관한다.
- 유독성 물질은 마개를 잠근채로 별도로 분리하여 잠금 장치 안에 보관한다.

나) 라벨링 및 위험 표시

- 장비의 보관 장소와 각각의 물건들에 대한 라벨 작업 수행
- 지도 교사는 약품을 학생들이 그 시간에 사용할 만큼만 덜어주고 약품병 곁에 붙여진 라벨에 이름이 분명치 않거나 정체불명의 약품인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보관장소에 보관 한다.

## 나 재난대피 훈련 연간 계획

### 1)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훈 련	목 표	시 기
소방대피훈련	자체 1회	3, 7, 10, 12월 예정
	합동 1회	5월 예정 (소방서와 합동)
지진대피훈련	자체 4회	4, 6, 9, 11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 방식은 변동될 수 있음

### 2) 세부 훈련 계획

※ 「유치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배포 및 실제 훈련 내용은 별도계획 수립

### 3) 비상 배낭의 마련과 관리

- 가)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유치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치원 행정실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 나)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 다) 재난대응 훈련 시, 비상배낭 활용 훈련 포함
- 라) 비상 배낭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li> <li>○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각종 설비도면 등)</li> <li>○ 유아와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li> <li>○ 화재경보기 작동법</li> <li>○ 스프링클러 작동법</li> <li>○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li> <li>○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 연락처</li> <li>○ 학생 대피장소</li> <li>○ 구급약품 배치 현황</li> <li>○ 비상용 손전등</li> <li>○ 지압봉대</li> <li>○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li> </ul>
--	---

## 다 재난별 유형별 역할과 대응절차

### 1) 대피(evacuation)

대피는 화재, 폭발, 불법침입자, 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이 운동장, 체육관 또는 유치원 밖의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

### 2) 역대피(reverse evacuation, 실내대피)

역대피(Reverse Evacuation)는 유치원 건물 바깥보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황, 즉 악천후, 지역사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 조직범죄활동 또는 유치원 밖에서의 위험물질 유출 등과 같은 유치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행된다.

### 3)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 절차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학생, 직원, 시민 등이 유치원 내에 설치된 대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락다운(Lockdown)

락다운은 흥기 난동이나 불법침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간장벽(time barrier)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의 물리적 대응방안으로 독립형 방어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후, 그곳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피방안 또는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 5) Drop-cover-hold(몸을 낮추고, 머리를 감싼 자세 유지)

Drop-Cover-Hold는 사전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폭발, 건물 붕괴,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교실 천장과 벽 등에 놓인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교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파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 6) 폭염

통상 30°C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부종,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 7) 황사

눈, 코, 기관지 질환, 심한 경우 심장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빈번한 황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목 보호 대처행동	코 보호 대처행동	코 보호 대처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li> <li>• 창문을 닫고 물수건을 넣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한다</li> <li>• 양치질, 헹배대, 잇몸프함을 하고 깨끗한 물이나 가글로 목구멍을 헹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를 잇박자로 눌러 콧물을 빼낸다</li> <li>• 콧구멍을 한 쪽씩 막고 번갈아 준다</li> <li>• 깨끗한 물로 콧속을 세척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절대 비비지 말고 자라리 눈물이 흐르게 한다</li> <li>• 렌즈를 끼던 사람은 안경으로 바꾸어 착용한다</li> <li>•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li> <li>• 두 손을 비벼서 열이 나게 한 후 두 눈에 갖다 대어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li> </ul>

#### 8) 태풍 집중호우

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과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 9)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 10) 식중독

식품섭취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인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 유치원 급식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관 심(Blue)	주 의(Yellow)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지수 : 10~34</li> <li>·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li> <li>·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지수 : 35~50</li> <li>·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보도</li> <li>·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li> <li>· 일부유치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li> </ul>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li> <li>▶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li> <li>▶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유치원)</li> </ul>
구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지수 : 51~85</li> <li>·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li> <li>·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li> <li>· 10개 유치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지수 : 85이상</li> <li>·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중독 발생</li> <li>· 단위유치원 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생</li> <li>· 30개 유치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li> </ul>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li> <li>▶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li> <li>▶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유치원)</li> </ul>

11) 화재

- 유치원은 소방훈련에 관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화재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훈련받는다.
- 화재 또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또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즉시 신고한다.
- 비상사고지휘관(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현장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한다.

12) 지진: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13) 흉기 난동

흉기를 사용한 교내 범죄사고의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유아와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14) 무단침입/인질극

운동장이나 유치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아와 교직원의 생명과 유치원 재산을 보호한다.

15) 폭발사고

보일러 과열, 가스누출, 화학(위험)물질의 유출, 사람에 의한 폭발물 설치, 자연재해 등의 결과로 폭발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치원이 취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피 프로토콜 /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
- 응급의료 프로토콜 / · 정신건강치료 프로토콜

폭발을 목격한 교직원, 유아 또는 방문객 등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을 유치원장과 119에 신고한다. 폭발사고 현장지휘관(소방관/경찰관)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들에게 넘기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 안 된다.

## 16) 현장체험활동에서의 사고

### <현장체험 버스사고>

일반적으로 버스는 유아들을 단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버스기사가 안전한 운전을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나 날씨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이 현장체험활동에 사용할 버스에는 항상 응급상자, 소화기, 손전등, 비상경고장비(교통사고 안내판, 야광조끼 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가) 버스사고 발생시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비상대응기관(119, 112)에 응급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 사고의 심각성, 부상자, 현재 버스에 비치된 장비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활동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활동 그리고 사고로 인한 2차적 위험상황(화재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 사고 발생시 버스기사에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시동을 끄며, 비상등을 켜도록 한다.
- 사고로 인해 필요한 후속의 대응행동을 실행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침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 버스기사에게 사고에 의한 화재와 같은 2차적인 위험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 하도록 한다.
-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가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란 것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유아들을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일 화재나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등과 같은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안전한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부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상자를 버스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유치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대응기관이 사고로 인한 상황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상황 변화를 알려준다.
- 만일 유아들이 사고버스에서 다른 장소(병원, 피난장소, 다른 버스)로 이송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이송된 유아의 이름 등)를 유치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유아와 차량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에 대한 증거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유지한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구급요원들의 지시에 협조한다.
- 사고처리가 종결된 이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 나) 버스사고 발생시 유치원장/안전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사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찾아 보내거나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를 지원할 교직원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한다.
- 사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버스 탑승객의 이름, 상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송된 경우 그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교육청과 유치원의 부모연락 담당자에 이를 통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상자를 치료하는 응급요원(또는 이송병원의 치료의사)에게 유치원이 보유한 특별 배려 학생들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에 파견된 교직원들에게 후송하는 부상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을 지시한다.
- 「가정복귀(유아/학부모 인계)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17)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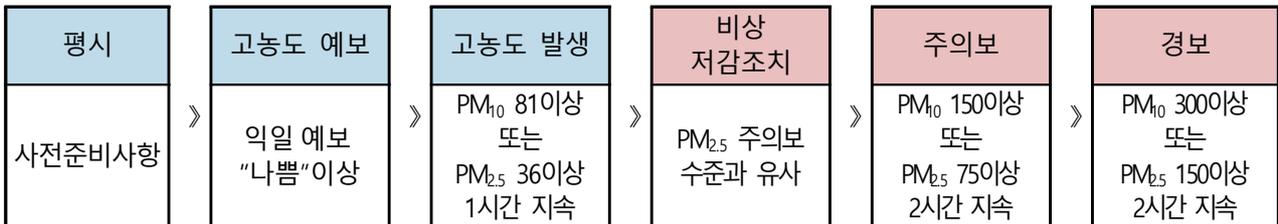
### 가) 목적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및 운영

### 나) 추진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및 이행
  - ※ 발생 단계 : 평시-고농도 예보-고농도 발생-비상저감조치-주의보-경보
-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 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유아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 학기초 미세먼지 조치·대응사항 관련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등
- 유아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PM_{10}$   $75\mu g/m^3$ ,  $PM_{2.5}$   $35\mu g/m^3$ )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대응요령 (각급유치원) ▣



단계	대응요령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li> </ul> </li> <li>■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li> <li>■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li> <li>■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math>PM_{10}</math> <math>100\mu g/m^3</math>, <math>PM_{2.5}</math> <math>35\mu g/m^3</math>) 준수</li> <li>■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li> </ul> </li> <li>■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li> </ul>
고농도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li> <li>■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li> <li>■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코리아(<a href="http://airkorea.or.kr">airkorea.or.kr</a>),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li> </ul> </li> </ul>
고농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li> <li>■ 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li> <li>■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유·초 실외수업 금지 권고),비갈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li> <li>■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유아 관리대책 이행</li> <li>■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li> </ul>

단계	대 응 요 령	
비상 저감조치	국·공립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기초 예외 차량 목록작성)</li> <li>■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li> <li>※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운행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호(5등급여부 확인)</li> </ul>
	사립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li> <li>※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운행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호(5등급여부 확인)</li> </ul>
	모든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원시간 조정을 실시</li> </ul>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 수업 대체)</li> <li>■ 각급 유치원 내 급식실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li> </ul>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li> <li>■ 수업시간 조정, 등·하원 시간 조정</li> <li>☞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li> <li>※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원 동행 등 등하원 안전 확보</li> <li>② 유치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li> <li>■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li> <li>■ 각급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li> </ul>	

### 18) 감염병 (※코로나19)

가) 목적: 감염병 (신종코로나) 로부터 유아와 교직원의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한다.

나) 역할

- ① 교직원: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유아 및 가정에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한다.

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단계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Blue)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or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라) 유아발열체크대장

날짜	이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	등원														
	점심														
3/3	등원														
	점심														
3/4	등원														
	점심														
3/7	등원														
	점심														

## 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모든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육부 고시에 의거 안전연수 이수 의무

대상		의무 이수시간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여부	비고
1. 유치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3년마다 15시간 (2021. 12. 31. 이전까지 의무 이수)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직무연수, 원격연수, 자체연수(전문가 초빙)
2. 계약제 교직원 (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원어민 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3년 이상 근로 계약 종사자	3년마다 15시간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6개월 이상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	6개월마다 2시간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6개월 미만 계약 종사자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유치원 자율 실시
3. 교육활동참여자 (배움터지킴이, 어머니폴리스, 조리직원 등)		연간 1회 이상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자체연수 (연수자료 활용)

### 2) 모든 교직원은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 이수

- ① 유치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일시, 장소, 대상자, 교육 강사의 자격(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li> <li>● 교육 내용, 외부 협조기관 및 소요 비용</li> <li>● 기타 교육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li> </ul>
---

- ② 유치원장은 응급처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 3)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 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 이상
- ③ 학부모교육 : 유치원별, 교육지원청별 (예비)학부모교육 실시
- ④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 자율적 운영

### 4) 2022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계 (A)	교원	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계 (B)	이수율 (B/A)×100
2021		18	4	7	29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자원봉사자 2022년도 이수 예정.				
2022		23	6	12	41					

### 5) 2022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계획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교직원 수				교직원 수				
교원	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소계 (B)	교원	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소계 (D)	교직원 (D/B)×100
23	6	12	41	2022년도 중 실시 예정				

##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

### 1) 근거

-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 아동복지법 제3조, 같은법 제17조,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3)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거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징후

- 수면 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 (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및 강요하는 행위

####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크고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음(유아교육법상 교직원 및 강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5)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노력

####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
- 1개 이상의 문항에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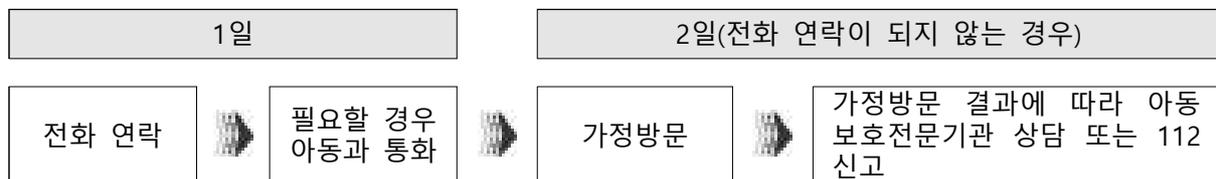
연번	체크 항목	체크란(v)	
		예 □	아니오 □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 6) 장기(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 입학 전 "보호자 동의서(미인정결석 시 가정방문)" 취합

□ 장기(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절차



- 1일차에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
- 2일차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
- 가정방문 결과 아동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 7) 피해아동 보호

### □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❶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 아동학대 사안 대응 절차

대응 절차	유치원의 역할
평상 시	.매일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보호자 동의서(미인정결석 시 가정방문)를 사전에 받아둠(유치원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징후 발견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신고여부 판단
응급상황 시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 분리 .긴박한 상황인 경우 유아를 병원에 데려간 이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 엄수
현장 조사	.아동조사 시 유치원 내 독립된 장소 제공 협조 .피해아동에 관한 관련자료 제공 등 조사 협조
조치 결정	.피해아동의 학적 처리 협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비밀 보장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피해학생을 대해야 함 .피해유아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해 상태 확인 .다른 아동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사후 관리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스러운 상황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지원

## 8)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

대 상	교 육 명	시 기	교육방법
유아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경계존중)	연중	교육과정 연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해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3월	자체연수 또는 시청각(인터넷)교육
학부모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5월	가정통신문

### 바 유아 성행동 예방 및 대응계획

#### 1) 목적

- 성폭력 예방 중심의 **유치원 성교육**과 함께 유아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에 따른 **성 인지 교육**을 통해 유아의 성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 신장
-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 문제 예방 및 사안 발생 시의 대응 능력 제고**

#### 2) 방침

- 개정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실시
-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동화, 장소·상황에 따른 역할극,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 유치원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수시 관찰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마련

#### 3) 세부실천계획

가) 성교육담당업무 분장

구분	역할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내 성교육 및 성 행동 문제 담당 교사 지정 및 연수 이수 지원</li> <li>▶성 행동문제 발생 시 담당교사와 함께 지원 요청 및 초기조사 협조 등 대응 총괄</li> </ul>
성교육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교육 이수 후 학급 담임교사에게 전달 연수 실시</li> <li>▶유아 대상 성교육 및 부모와의 소통 기획 추진</li> <li>▶성 행동문제 발생 시 사안 초기 조사 및 지원 요청 등 대응</li> </ul>
학급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교육 전달 연수 이수 및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li> <li>▶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지도·관찰</li> <li>▶성 행동문제 발생 시 상황 파악 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에게 즉시 보고</li> </ul>

## 나) 유아 성행동 수준 진단

□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수준별 유아 성행동 기준에 따라 성행동 진단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 ▶ 잠시 멈추었다가도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등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 강요 및 폭력성 ○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 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등

## 다) 성행동 문제 대응 관리

□ 수시 관찰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유지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li> <li>■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li> <li>■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li> <li>■ 유치원 초기 대응 철저</li> <li>■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중지, 상황 파악</li> <li>■ 부모 면담</li> <li>■ 유치원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li> <li>■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li> <li>■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컨설팅 지원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li> <li>■ 상황 파악</li> <li>■ 보호자 연락, 피해 아동 치료 연계</li> <li>■ 유치원 사안 대응지원단 운영</li> <li>■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및 지원 요청</li> </ul>

#### 4) 성교육 연간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유아 중심 안전교육의 내실화  · 체험 위주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편성·운영</li> <li>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li> <li>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나침반 5분 안전 교육' 운영</li> </ul>	연중
	<b>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 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li> <li>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li> <li>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li> <li>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li> <li>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li> </ol>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b>아동복지법 시행령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 몸의 소중함</li> <li>2. 내 몸의 정확한 명칭</li> <li>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li> <li>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ol>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b>유치원 성교육 표준안</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발달: 나의 몸과 마음, 남녀의 성과 생활</li> <li>2. 인간관계: 소중한 가족,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결혼의 의미와 나</li> <li>3. 성 건강: 내 몸의 관리</li> <li>4.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 성역할,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li> </ol>	연간 20시간 이상 확보 노력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과의 연계지도(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활용)</li> <li>·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찾아오는 체험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7월)</li> <li>· 학부모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연수 1회</li> </ul>	연중
	외부인 출입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 출입 통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li> <li>·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홍보</li> <li>·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간 1시간 이상)</li> </ul>	연중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 직무 연수 이수(15차시 이상: 3년주기)</li> <li>·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 연간 4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li> <li>· 성폭력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간 1시간 이상)</li> </ul>	연중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관리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현장 관리감독 강화</li> <li>· 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 강화</li> </ul>	연중
안전한 유치원 풍토 조성	유치원 안전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안전주간 운영(연1회 이상)</li> </ul>	연 1회 이상

\* 교육계획은 유아의 흥미와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기대효과

- 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성교육으로 유아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 유아 성 행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제고

### 3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 가 방과후안전관리 강화

##### 1)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성별	연령 (반)	행복1반 ~ 행복6반						비고
		행복1반	행복2반	행복3반	행복4반	행복5반	행복6반	
원아수	남	7	7	12	12	10	7	▶ 단일연령 학급 운영 ▶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
	여	7	7	10	10	10	10	
	계	14	14	22	22	20	17	

##### 2) 방과후 유치원 참여 학생의 안전관리 대책

가) 방과 후 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

-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귀가 지도 실시

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대비

- 문자 서비스(SMS)제공,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유아 안전 관리 대책 강구
-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CCTV, 방화차단막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다) 방과 후 유치원 안전 관리 방침

- 강사는 단위 수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강사는 수강 시간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방과 후 유치원 수업 중에 위험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철저히 위험성을 알리고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방과 후 유치원 수업 후에는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작 후 바로 전화나 문자로 결석을 확인하도록 한다.
- 강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학부모와 방과후 수업 담당교사에게 연락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사는 수업 중 유아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수업이 끝나기 전 유아들의 교실 밖 출입은 삼가며, 필요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한다.
-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는 매일 1회 이상 유치원근무 교사 및 주무관의 순시를 통해서 유아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한다.
- 수업종료 후 담당강사는 교실을 정리 정돈하고, 각 실 쓰레기통 소거 및 전기 제품 등 전원차단 등 철저히 확인하여 화재 예방에 힘쓴다.

#### 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안전관리

##### 1)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점검
- 나) 유아의 교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대응시스템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등하교 및 교내 이동시 안전 확보

##### 2) 특수 교육 대상 유아의 인권 보호

- 가) 성교육 및 위기(위험) 대응을 위한 자기보호 교육 실시
-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대상의 유치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라)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 차별금지 학부모 교육 실시

**3) 해당 유아와 교직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등을 운영**

- 가) 재난 발생시 우선적인 구조와 재난대응을 위하여 특수교사가 유아를 보호·인솔
- 나) 재난대응 조력자로 지정받은 사람(Buddy)은 특수교사(또는 보건교사)로부터 장애에 따른 특성과 유의사항에 관한 특별교육 참여
- 다) 특수 교육대상 유아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특수교사가 인솔하고 나머지 유아는 통합학급의 담임교사가 인솔

**4) 장애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대응 지도법**

장애영역	특성	고려사항
자폐성 장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유지하려 함 과제의 차별화 필요하며 또래지원 전략이 효과적임	과제의 구조 및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 비상 시 절차에 따른 반복된 훈련이 필요 학생들의 행동, 감정에 혼란스럽지 않은 단서 사용 유치원에서의 일상생활 동안 차별화된 수행과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한 훈련 필요
시각장애 (저시력, 맹)	학생이 부분 또는 완전한 시력 상실의 경우 색상, 형태, 움직임 등을 보거나 보지 못할 수 있음	위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시설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설을 인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가청 경보들을 보완하는 점광, 진동 호출기 등(점자 표지판, CD,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해야 함
청각장애	청각에 심한 손상을 가짐 보청기 등의 보장구 사용에 의해 청력이 보완되나 경보를 듣지 못할 수 있음	대체 통신 시스템 사용
중복장애 (청각, 시각)	듣는 것과 보는 것 둘 다 심각한 손상을 가짐 제한된 시력 또는 청력을 가지고 있음	시설을 인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함 안전한 장소와 위치로 이동 시 지원인력이 필요 경보음을 보완하는 점광, 진동 호출기 등(점자 표지판, CD,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해야 함
정서 및 행동장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늦고, 주의력 및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함 자기 관리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지적장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늦고, 주의력 및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함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함 학생의 반응을 자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함 비상 시 반복 훈련이 필요함
지체 장애	움직임에 제한이 있음 이동하기 위하여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사용함	학생이 안전한 지대로 접근하여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휠체어, 목발 보호 장치 같은 장비가 필요함

## 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대책

### 유아안전과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적용

- 1) 원칙: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 추진
    - 준비~평가까지 유아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젝트형 모델 권장
  - 2) 견학 장소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 3) 이동수단별 안전교육 철저: 차량 운전자 적격여부, 차량 적합여부 사전점검 및 안전운행목록 전달
  - 4) 담당 지도교사 임장지도 철저
    - ① 야외 단체 활동은 유치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 ② 참여 학급단위 비상배낭(가방) 상시 휴대 (인솔교사, 담임교사)
      - (예시) 로프(10m), 비상용 칼, 구급약품, 비상연락망, 매뉴얼, 무전기 등
    - ③ 현장 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차량이용, 시설이용, 예절,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현장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
      - 7대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 ▶ (예시) 현장체험학습 유아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나의 안전지수' 알아보기, 토의·토론 기반형 안전 교육 실시
    - 이동 중, 체험 현장에서 각종 사태 발생시 대응 방안 토의 토론
    - 시나리오 작성하기(교통편, 동선, 방문지, 위기상황 설정 등)
    - 퀴즈, 일문일답, 게임을 통한 위기 시 대응방안 역할 분담 익히기
    - 역할극을 활용한 화재발생시 대처법, 비상탈출 방법, 신고요령 등 교육
- ④ 인솔·지도교사는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 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모바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응

## 4 유치원 안전문화 확산

### 가 '유치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 1)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관련 행사 실시

-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 전개
- 유치원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안전교 실시

#### 2) 교직원 등이 스스로 참여하는 유치원 안전점검실시

구성원	역할(임무)
행정실장, 시설·소방담당	▶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담임교사	▶ 교실 및 복도, 교무실 안전점검
행정실장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유치원장 보고
시설·소방담당	▶ 점검결과 기록 및 행정실장 보고

분야	안전 점검 사항
건축	▶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특별교실, 복도, 계단 등 (예시)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가(문턱, 계단턱, 마루, 환기구, 스템박스)
전기	▶ 수변전설비,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등 (예시)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있는가

#### 3) 유치원 및 각 기관은 전등과 전열(선풍기 등) 스위치를 구분하여 표시 할 것

### 나 유치원 안전 관련 유아, 학부모 연계 강화

#### 1)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수시 운영

대상	운영 방법
유아	· 매일 자투리시간 등을 활용 5분 안전교육 실시 · 관련 교과시간을 이용한 5분 안전교육 실시 등 · 수업 속 반복적 학습으로 인식개선 및 위기대응 방법 완벽 숙지
교직원	· 교직원 회의 시 안전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	· 학부모 회의 시 안전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 매 시기별 안전 관련 안내장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전생활 강화

#### 2) 등·하원 교통 상황을 반영한 체험,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①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
- ② 유치원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 방문, 교내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도 작성, 안전통학로지도 만들기
- ③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내
- ④ 등·하원 유아를 위한 교문 앞 정차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 ⑤ 어머니폴리스, 교통안전지킴이, 교직원, 경찰서 연계활동 유치원주변 등·하원길 안전지도 강화

#### 3) 유치원 안전 주간 운영

- ① 목적 :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주간 기획과 주도적 참여를 통한 안전예방.대응 능력 강화한다.
- ② 내용 : '유치원 안전주간'을 지정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연1회)

③ 실시 시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주에 실시한다.

④ 활동 내용

- 안전 포럼 또는 워크숍 개최(지역사회 경찰관, 소방관 초청 강연 등)
- 유치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영상, 웹툰, 브로셔 제작·홍보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유치원 안전문화 진단 실시
- 유치원안전 행동수칙 서명식, 유치원안전 개선 관련 제안함 설치
- 안전체감 정책, 안전교육 우수사례, 수기 등의 공모전과 시상
- 안전체험관 견학을 통한 교육 및 훈련, 유치원안전에 대한 종합점검과 개선
- 유치원안전사고 무발생 콘테스트, 포스터/UCC 제작 콘테스트 등

**4)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및 건강 관리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

- ① 자연재난(대기오염 포함) 상황전파자를 지정, 신속히 대응
- ② 자연재난 상황전파자는 관련기관 예보·경보 앱 설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
- ③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등),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수업단축,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보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제공 관련자료 활용 등)

## 5 안전한 유치원 시설 및 환경 조성

### 가 유치원시설 안전 점검

#### 1) 목적

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안전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2)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유치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육부)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교육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3) 추진내용

##### - 자체 안전점검

·시기별 안전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개선내용 조치 후 결과 보고

##### - 전문기관 안전점검

·전문기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 안전점검 대상 ■

- (시기별 안전점검 대상) 모든 유치원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대상
  -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
- (제3종 시설물 대상) 준공 후 15년경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안전취약시설 대상) 재해취약시설 지정 대상시설 중 화재위험시설에 포함된 기숙사, 운동부 합숙소(침터) 및 사고위험시설에 포함된 수련 및 체육시설

## 나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

### 1)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화를 통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 ▣ 관련법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교육청)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 법적 주요 의무사항\* 이행
  - ※ 정기시설검사 (법 제12조 : 2년/1회 이상), 안전교육 (법 제20조 : 2년/1회 4시간이상), 보험가입(법 제21조 : 매년 3월 2일 갱신)
- '월'안전점검 실시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사용자(유아·학부모 등) 교육 및 안내

## 다 유치원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 1) 근거 :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제7조
- 2) 2022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 연수
- 3) 2022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및 실시 결과보고

## 라 유치원급식 안전관리 강화

### 교육급식과 『유치원급식 안전 매뉴얼』 참고

### 1) 유치원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 가) 개학시기 유치원장 및 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 나) 방학 시기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 2) 유치원 자체 위생관리 강화

- 가) 방학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나) 유아 및 조리 종사원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급적 가열조리 식단으로 운영

### 3) 식료품 보관 및 관리 방침

구분	보관장소	보관방법	관리방법
곡류(쌀)	조리실내 식품창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	식품위생법 관리기준에 의거 매일 확인 체크함
양념류(실온)	조리실내 식품창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	
양념류(냉장)	조리실내 냉장실	온도 5°C 이내 보관 유지	
기타 식품	조리실내 냉장고	온도 5°C 이내 보관 유지	

#### 가) 냉장·냉동보관 요령

- 냉장고의 온도는 5°C이하, 냉동고의 온도는 -18°C이하가 바람직하다.
-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가져오자마자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넣도록 하고,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70%정도만 차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냉장·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품의 표시사항(보관방법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보관한다.
-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냉장·냉동 보관하고, 뚜껑 또는 투명비닐을 씌운 후 식품물을 보관한다.
-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는 분리하여 저장하고 달걀은 일정 장소에 별도의 투명비닐을 씌워 보관한다.

#### 나) 상온 보관 요령

- 가공식품은 제품별 보관온도 및 유통기한 이내로 보관한다.
- 식품을 싱크대 밑에 보존하는 경우 수분이 새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상온에서 보관하는 식품의 경우 구입 일을 적어놓고 구입한 순서대로 사용하도록 하며 개봉한 제품은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유통기한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이 짧은 것부터 진열하며, 유통기한의 라벨이 보이도록 진열한다.
- 식품보관실에 세척제, 소독액 등의 유해물질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대 포장의 제품을 나누어 보관할 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한다.

## 마 유치원 및 건물 출입 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 1)출입 안전관리

- 가) 정문, 후문, 옆문 : 본교 재학생 등·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 출입을 통제한다.
- 나) 유아들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통제한다.
  - 외부인의 출입증(방문증) 패용 안내문 게시 필수
- 다) 유치원행사(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시에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 라) 하원 시간 외에는 정문 외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되, 일과 전·후 유치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한다.

### 2)유치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 가) 등·하원 시간 외에 출입문 전부 폐쇄 (단, 유치원장 승인에 의해 시간 조정)
- 나) 일반(차량)출입증, 방문증 발급 철저
- 다) 출입통제 절차 및 대응요령 교육(매월 1회, 유아 및 교직원 대상)실시 등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 교육

### 3)방문객의 유치원 출입 방침과 절차

- 가) 방문객은 행정실에서 관리대장에 성명 및 방문목적 기재해야 한다.
- 나) 『방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교내 출입 허가한다.
- 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 및 용무 후에는 『방문증』을 행정실에 반납하도록 한다.
- 라) 출입 거부  
유치원장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유치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유치원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하고,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 4)단체 방문객의 출입

- 가)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 나) 단체방문객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다) 유치원 자체 대규모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유치원장은 시간을 정하여 방문증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5)물품 수령 방침과 절차

- 가)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수령한다.
- 나)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유치원에서 수령하지 않는다.
- 다) 식자재의 경우 급식실에서 수령하며, 영양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라) 택배기사의 유치원출입도 일반인의 출입통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학생보호인력은 택배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의 교내 진입을 허용한다.
- 마) 유아 등하원 시간대에는 택배차량의 교내진입을 불허한다.
- 바) 학부모 음식(간식)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 **바** 통학 안전지도 및 관리 현황

### 1)유치원 주변 통학로, 교내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도 작성 등 대응 철저

- 가) 유치원 교내외 위험지역 사전 교육 철저(통학로 및 통학방법 조사- 교무실비치)
- 나)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내(학부모총회, 안내장)
- 다) 등·하원 유아를 위한 교내 외부 차량 진입 금지(학부모총회, 안내장)
- 라) 등·하원 시간대 교문 앞 주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 안내

### 2)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유치원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가) 등·하원 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
- 나) 교직원, 유아보호인력 등 유치원 주변 등·하원길 안전지도

### 3)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관리 안전 방침

- 가) 목적 : 유아들의 안전한 통학 관리 강화를 통한 차량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나) 추진내용
  - 유치원을 방문하는 학부모차량의 경우 되도록 주차를 통제하고 도보이용을 홍보한다.
  - 등·하원 시간대의 외부차량 교내 진입을 금지한다. 단,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의 유치원 방문차량의 경우 차량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 후 주차장에 주차한다.
  - 교직원, 장애인, 방문객에 대한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특히 장애인 주차공간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위치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 보행자의 흐름과 차량흐름이 상충하는(traffic conflict)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행정실 및 교무실에 방문하여 아래 양식과 같이 차량출입증을 교부받아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비치하여야 한다. (방과후 교사차량에도 부착)
  - 에너지 절약 및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 또는 선택요일제를 실시한다.

### 4)시설 공사 시 안전관리

- 가) 시공업체에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사와 필요한 경우(소규모공사)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아안전을 위한 상호협조체계 등 유치원 실정이 고려된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서」요청
- 나) 유치원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시설공사 착공 시 유치원장은 공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일지를 관리하고, 각 시공사는 작업 계획 시행 전 제출

### 5)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 \* 행정실장은 마스터키(비상열쇠)를 관리 및 분기별로 점검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구분	보관장소	관리 방법	특이사항	비고
평상시	행정실 교무실 열쇠보관함	각 교실 등 열쇠번호 교체 시 즉각 교무실에 변경 처리	비상열쇠(마스타키)는 시설관리 직원 및 당직자가 관리	
비상시	행정실 비상배낭	"	"	

## 6)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시설 일시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참고

### 가) 개방 원칙

유치원시설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설 개방·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신청 절차 및 사용허가 내역 등)은 우리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나) 안전관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유치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몰 후에 유치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유치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유치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유치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유치원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중이라 할지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 ② 이용자는 유치원 시설물을 오염·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시에는 즉시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③ 이용자는 유치원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흡연, 탈의 등의 교육적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④ 이용자는 유치원 내에서 가열 및 조리할 수 없고, 허가받은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
- ⑤ 이용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이용자는 본교의 관리자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와 허가 서식

- ① 유치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방문 또는 유치원시설 사용 예약을 통하여 신청 접수한다.
- ② 신청 접수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개시 2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유치원 관리자 및 당직자는 해당 사용일에 단체 이용자의 신분,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개방을 허락한다.

## 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가 유치원 안전 공제회 보상 청구 관리 및 검토

유치원 안전사고에 의한 공제회 보상 청구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학급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시행

항 목	세부 내용
부상 유아에 대한 치료기록 분석	-안전 사고 발생 시 바로 메신저 통하여 전교직원에게 (주의) 알림
분석 결과를 통한 저감 방안	-학급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유아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 나 재난사고 발생 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 1) 목적

유아 자살 또는 유치원구성원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유치원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유치원이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

### 2) 유치원의 역할

#### 가) 사전 조치사항

- 유치원은 유치원 내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담한다.
  - 구성 시 유치원 내·외 전문가를 위기대응팀에 구성하고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유치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유아 자살 또는 유치원구성원들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유아들이 재난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 나) 사후 조치사항

- 유치원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대응 관계자(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유치원으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유아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반드시 원감으로 일원화)
  -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유아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 유아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유치원 내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 상담실) 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 지원
- 심리적 위기 유아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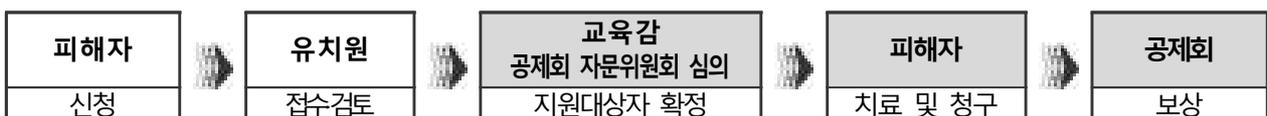
## 다 피해 보상 청구

### 1) 유치원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처리 절차

#### 가) 유치원안전사고 발생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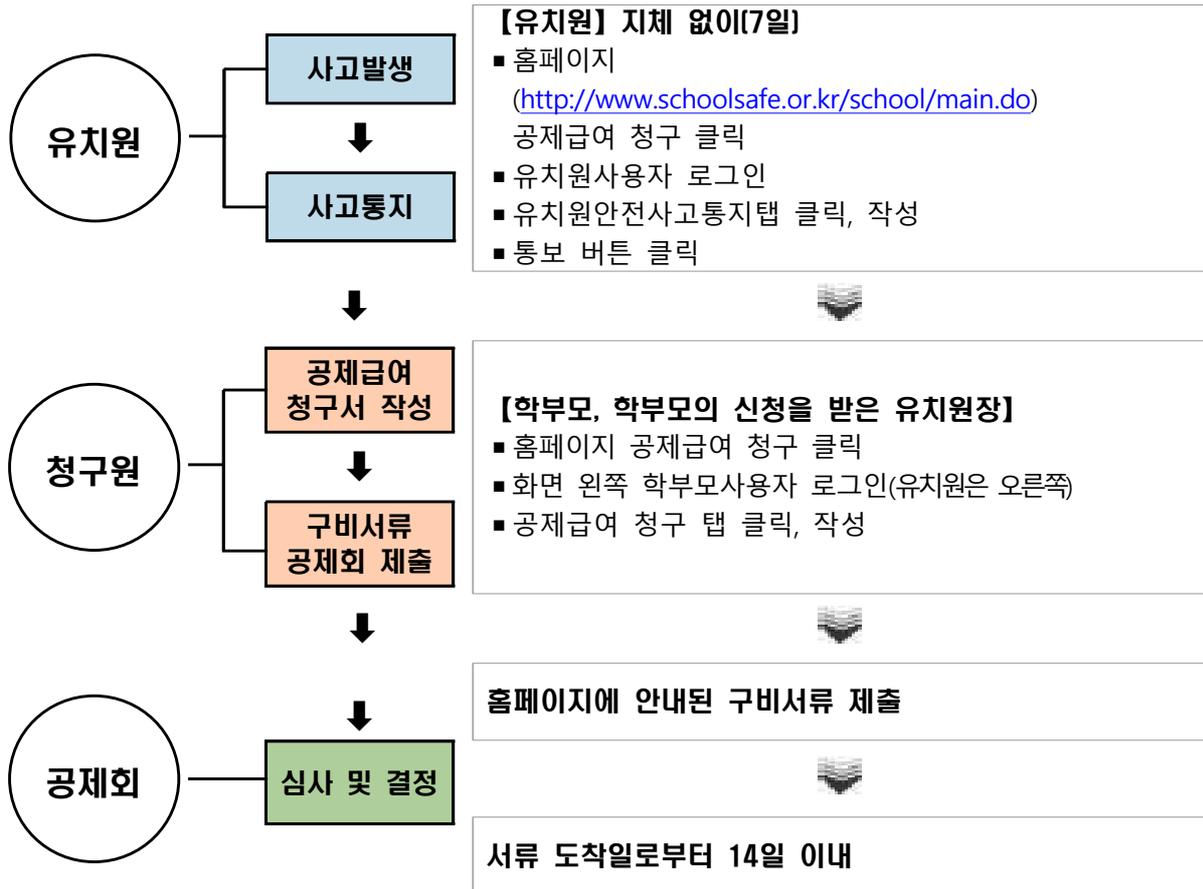
#### 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신청



### 2) 교육활동 중 인적 사고의 경우 피해 보상 청구 절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아,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유치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이란 유치원의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유치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유치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원, 현장실습,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말함

**<유치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3)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 공제회 가입절차 진행 전 기관별 공제회 가입대상(보유·관리물품 및 재산) 현행화를 실시하여 피해 복구비 미지급 및 공제 가입비 과다지출 사전예방
- 재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비 지급신청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절차 ▣**

- 재난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콜센터 ☎ 1688-4900



## 2022학년도 1학기 교실 안전 점검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점검하신 후 불량인 경우 유아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 서둘러 행정실로 개선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가온유치원 \_\_\_\_\_ 반 점검자\_\_\_\_\_

분야	안전점검항목	이상유무(양호○, 불량×)						개선요망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b>교실</b>	1. 교실문의 개폐는 순조로운가?							
	2. 교실바닥, 벽, 천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없는가?							
	4. 교실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							
	5. 창문과 창들의 파손은 없는가?							
	6. 창문주변에는 닫고 올라설만한 물건이 없는가?							
<b>복도</b>	7. 복도바닥, 벽, 천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8.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							
<b>시설</b>	9. 책상, 의자, 교구장의 파손은 없는가?							
	10.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11. 못이나 부품등이 빠져나와 있지는 않은가?							
	12. TV, 액자, 거울등의 파손은 없는가?							
<b>전기</b>	13. 전등, 스위치, 콘센트 파손은 없는가?							
	14. 전선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15. 한개의 전용회로에서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이하인가?							
<b>화장실</b>	16. 화장실바닥, 벽, 천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17. 화장실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18. 변기, 세면대, 바닥이 청결한가?							
	19. 변기, 세면대, 바닥파손은 없는가?							
	20. 칫솔소독기를 위생적으로 관리보관하는가?							
<b>화재</b>	21. 소화기는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22. 가연성 물질을 보관·적재하고 있는가?							
<b>기타</b>	23. 화학약품, 세제 등 위험물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b>기타사항</b>								

## 2022학년도 1학기 특별실 안전 점검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점검하신 후 불량인 경우 유아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 서둘러 행정실로 개선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가온유치원 \_\_\_\_\_ 반 점검자 \_\_\_\_\_

분야	안전점검항목	이상유무(양호○, 불량×)						개선요망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특별실	1. 문의 개폐는 순조로운가?							
	2. 바닥, 벽, 천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없는가?							
	4.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							
창	5. 창문과 창틀의 파손은 없는가?							
	6. 창문주변에는 딛고 올라설만한 물건이 없는가?							
복도	7. 복도바닥, 벽, 천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8.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							
시설	9. 책상, 의자, 교구장의 파손은 없는가?							
	10.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11. 못이나 부품등이 빠져나와 있지는 않은가?							
	12. 가구, 액자, 거울등의 파손은 없는가?							
전기	13. 전등, 스위치, 콘센트 파손은 없는가?							
	14. 전선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15. 한개의 전용회로에서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이하인가?							
화재	21. 소화기는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22. 가연성 물질을 보관·적재하고 있는가?							
기타	23. 화학약품, 세제 등 위험물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기타사항								

# 일 일 화 재 예 방 점 검 표

□ 점검실명 :

점검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직/성명)
		양호	불량 (점검번호)	불량 조치사항	
	22.03.02				
	22.03.03				
	22.03.04				
	22.03.05				
	22.03.08				
1. 전기제품 전원을 차단(코드 제거) 하였는가?	22.03.09				
	22.03.10				
2. 가연성 물질을 보관·적재 하고 있는가?	22.03.11				
3. 소화기는 비치되었는가?	22.03.12				
4. 소화기는 사용가능 상태에 있는가?	22.03.15				
5. 개인 전열기구를 사용하는가?	22.03.16				
6. 소등 하였는가?	22.03.17				
7. 쓰레기통(휴지통)는 비웠는가?	22.03.18				
8. 퇴근 시 교실 및 복도 창문 개폐 여부 확인하였는가?	22.03.19				
	22.03.22				
9. 기타	22.03.23				
(현장에서 추가 점검사항이 있으면 추가 및 수정 가능)	22.03.24				
	22.03.25				
	22.03.26				
	22.03.29				
	22.03.30				
	22.03.31				